

[제목개정 2015. 6. 22.]

제40조의4(위 · 수탁계약의 양도 · 양수) ① 위 · 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 · 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· 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.

1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2. 그 밖에 위 · 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위 · 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 · 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-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· 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 · 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5. 6. 22.]

제40조의5(위 · 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 · 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 · 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·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6. 22.]

제41조(경영 지도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7. 16., 2021. 12. 7.>

1. 제11조(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
 2. 과로, 과속,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
 3.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 · 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7. 16.>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7. 16.>

제42조(경営자 연수교육) 시 · 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(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)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7. 16.>

제43조(재정지원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15., 2013. 3. 23., 2020. 6. 9.>

1.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
2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